

수 준	검 토	팀 장	실 장
1			

NARS  
입법조사회답

서삼석 의원 귀하

## [질의분리] 가격안정과 물가관리의 차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 법 조 사 관 김 규 호  
Tel.6788-4593/Fax.6788-4599  
E-mail: kyuh0@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 요지

- 의원실 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내용 중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이에 물가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법률 해석상 의문이 있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① 수급조절, 가격안정, 물가안정의 법률 해석상 의미
  - ② ①에 기반하여, 수급조절·가격안정·물가안정과 관련된 농식품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
  - ③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④ 만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포함된다면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와 상충하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 ⑤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회답일 2022.09.29.)

##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관련 문헌자료와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토대로 회답함

## ■ 주요내용

전반적인 물가안정 관련 법률 및 제도에 관하여는 타 조사관이 별도로 회답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제행정'으로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본문 흐름상 비교나 예시 등이 필요할 시에 한하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경제행정에 대해서도 일부 거론하였다. 또한 의원실 측 질의의 골자와 문제의식이 '수급조절, 가격안정, 물가안정의 법률 해석상 의미' 차이에서 출발하기는 하나, ① 국회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고, ② 의원실 측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안의 핵심 또한 법적 해석 문제와 더불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나 계층간·직업군간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사회적 합의와 양보를 위한 노력, 행정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아 이런 점들을 두루 염두에 두고 회답서를 작성하였다.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질서 내에서 필요불가결한 공법적 제도·기관으로, 우리 헌법은 제119조를 통해 경제 분야의 다양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규

제와 조정의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 이에 이들 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 예컨대 재산권, 계약의 자유,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 이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되기도 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예외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라고 할 것이며, 이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순으로 나타난다. 헌법에 규정된 농업 관련 국가의 의무를 보더라도 농산물의 수급균형 노력이나 가격안정 도모의 목적은 ‘농·어민의 이익 보호’임을 알 수 있다.[다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관련 장(章)인 제9장(제119조~제127조)의 한 조항인 만큼, 제9장의 첫머리(제119조)에 규정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나 ‘경제주체간의 조화’ 등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적 명분의 기본적 틀 위에서 이해됨이 적절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일차적 목적과 의의는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이러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과정도 동시에 포함됨으로써 ‘생산자 보호 목적의 가격안정’이 보다 큰 틀에서 ‘경제 전반의 물가안정’ 정책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혹은 ‘생산자 보호’라는 원칙과 ‘물가안정’, 혹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경제정책적 국가목표를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부 부처간 업무와 역할 측면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정책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대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집중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국가 전반적인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반영·조화시키는 방식의 추구가 관련 법문의 취지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 정책의 최종적인 형태와 효과에 대하여 행정법상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 행정청(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다소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민법」의 유추 적용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 ■ 목차

1. 조사회답의 방향 .....	1
2.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의의 .....	2
3.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위 ‘물가안정 주력’ 건에 대한 검토 .....	5

## 1. 조사회답의 방향

- 전반적인 물가안정 관련 법률 및 제도에 관하여는 타 조사관이 별도로 회답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제행정'<sup>1)</sup>으로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본문 흐름상 비교나 예시 등이 필요할 시에 한하여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경제행정에 대해서도 일부 거론하기로 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법제 중에서도 여기서는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법」, 「김치산업 진흥법」, 「인삼산업법」,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이 있지만, 상기 두 법률의 대표성, 상징성, 대상 농산물의 포괄 범위,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였음
  - 다만 경제행정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 작용에 그치지 않고 행정주체(여기서는 농정주체)에 의한 여러 시책의 조정·종합으로 추진되는 적극적인 사회형성작용이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내용도 논의에 참고함
    - 이는 본 질의의 배경이 된 사안(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함
- 그런 한편으로 의원실 측 질의의 골자와 문제의식이 '수급조절, 가격안정, 물가안정의 법률 해석상 의미' 차이에서 출발하기는 하나, ① 국회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고, ② 의원실 측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안의 핵심 또한 법적 해석 문제와 더불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나 계층간·직업군간 이해관계와 갈등의 조정, 사회적 합의와 양보를 위한 노력, 행정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아 이런 점들을 두루 염두에 두고 회답서를 작성함

1) '경제행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자신의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계획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구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유통·소비 등의 경제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이에 관여하여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유도 또는 조장하여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행정작용을 말함(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9.1., p.1341.)

## 2.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의의

-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질서 내에서 필요불가결한 공법적 제도·기관으로, 우리 헌법은 제119조2)를 통해 경제 분야의 다양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수권하고 있음
  - 정부 각 부처와 중앙은행은 이와 관련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 주요 분야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높은 고용상태, 대외경제의 균형, 지속적이고 적정한 경제성장, 물가수준의 안정이라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고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마의 사각형 (magisches Vierreack)’ 사이에서 시대적 과제가 제시하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낼 국민적 의무를 짐(신상준, 2021)<sup>3)</sup>
- 이에 이들 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정책(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은 국민의 기본권, 예컨대 재산권, 계약의 자유,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으로 경우에 따라 이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되기도 하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예외가 아님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각 호의 나열 순서가 추상도와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

2)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신상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박영사, 2021.5., p.149.

관리'라고 할 것이며, 이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의 경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호의 내용 중 가장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사실과 중요도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임

□ 헌법에 규정된 농업 관련 국가의 의무를 보더라도 농산물의 수급균형 노력이나 가격 안정 도모의 목적은 '농·어민의 이익 보호'임을 알 수 있음<sup>4)</sup>

- 다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관련 장(章)인 제9장(제119조~제127조)의 한 조항인 만큼, 제9장의 첫머리(제119조)에 규정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나 '경제 주체간의 조화' 등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적 명분의 기본적 틀 위에서 이해됨이 적절할 것임

□ 이로 미루어볼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일차적 목적과 의의는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예컨대 의원실 측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양곡관리법」 제16조<sup>5)</sup>의 경우에도, 쌀 변동식 불제 폐지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도입이라는 개정 배경과 이로 인해 법제화된 쌀 시장격리제(쌀 수급안정제)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면

---

4)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5)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쌀 목표가격을 전제로 하던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함이 「양곡관리법」 제16조 개정 및 쌀 시장격리제 도입의 취지임
- 실제 올해 실시된 세 차례의 쌀 시장격리도 그 실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2021년산 쌀의 수요 대비 과잉 공급 및 쌀값 하락의 가속화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임
- 농안법의 경우 제1조에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나열 순서상 생산자를 앞세우고 있음
- 또한 농안법의 제2장(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서도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의 예시(제8조)나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관련 규정 등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이슈 발생 시 농정당국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sup>6)</sup>

□ 다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이러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생산자 보호 목적의 가격안정’이 보다 큰 틀에서 ‘경제 전반의 물가안정’ 정책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곡관리법」의 경우 제16조제2항에서, 농안법의 경우 제8조제3항에서 가격안정 관련 시책 시행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 따라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업무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 농산물 수급조절 업무가 물가관리 업무와 전혀 별개라 하기는 어려워 보임
- 물론 그렇더라도 이는 미곡 격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의 협의에 임하는 기획재정  
부장관의 입장과 역할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이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라는 뜻은 아님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통화 측면에서  
의 ‘화폐가치의 안정’과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림축  
산식품부가 관장하는 (경제학적 재화로서의) 농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거나  
달성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전혀 아님
    - 법적으로도 물가안정과 관련된 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 규제와  
개별법상의 개별물가 규제로 대별되는데<sup>7)</sup>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제는 이중 후자의 일  
부라 할 수 있음
  - 다만 물가지수 내 농식품 가중치 비중 등과 연동되는 일부 제한된 영역이나 소비자의  
체감 상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때로는 국가 경제 전반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하여 공식적·비공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할 경우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

### 3.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위 ‘물가안정 주력’ 건에 대한 검토

- 전술한 내용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관련 정책과 관련하  
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혹은 ‘생산자 보호’라는 원칙과 ‘물가안정’, 혹은 ‘국민경제  
의 안정’이라는 경제정책적 국가목표를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을 설정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정부 부처간 업무와 역할 측면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정책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대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집중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국  
가 전반적인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반영·조화시키는 방식이 관련 법문의 내용과 체계  
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이 경우 정책의 최종적인 형태와 효과, 혹은 그러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  
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하여 행정법상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

7) 정하중, 앞의 책. p.1358.

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 행정청(농림축산식품부)에 일종의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할 것임

-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는 행정청이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또한 행정청의 직무 수행이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행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전술한 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와 목적을 고려하면, 의원실이 지적한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임
- 다만 그렇더라도 이는 다소 추상적인 규범으로 이해하여 정치적·도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고 「민법」의 유추 적용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